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8,765,387	18,862,962
일반회계		549,654,173	16,489,625
특별회계		79,111,214	2,373,336
기타특별회계		79,111,214	2,373,336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97,443	35,923
	주차장특별회계	637,905	19,13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9,734	5,3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802,890	864,08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41,840	10,255
	치수사업특별회계	423,287	12,69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280	30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7,484,851	1,424,546
	도시개발특별회계	32,984	9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462,063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674,24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9,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